每日新聞
2007년 02월 05일 002면

공기업 임원선임 사원 참여

4월부터 추천위에 포함…낙하산 인사 더 힘들 듯

공기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원들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15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추천위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원 대변자가 없는 임원추천위는 성립되지 않게 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원 중에는 노조원 외에 비노조원도 있으며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면서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은 뒤 대의원회의에서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물 2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추천, 1명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공사 사장을 뽑는다면 사원들은 노조원대표 4명, 비노조원대표 1명 등 모두 5명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대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부인물 B씨와 C씨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이들 중 B씨를 사장추천위원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총수입액 1천억 원 미만, 직원 정원 500명 미만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의 장에게 부여했다.

연합뉴스